

예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(안) 예고

「예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예천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19. 5. 1.

예천군의회의장



1. 개정이유

-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지역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에게 실종자 수색, 검문검색 등 필수 불가결한 출동에 한하여 방범대원 출동비를 지급하여 사기를 양양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임무(안 제3조 제2항)

- 근무조 편성 및 활동 실시 후 방범일지 작성 신설

나. 예산지원(안 제6조 제1항)

- 방범대원 출동비 신설

다. 예산지원(안 제6조 제3항)

- 방범대원 출동비 신청시 방범일지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 신설

3. 개정조례안

○ 붙임과 같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, 지방자치법 제22조

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

다. 예산조치 : 추후반영

라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마. 입법예고결과 :

바. 비용추계서 :

사.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없음

5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**2019년 5월 7일**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개 정(안)	수 정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

- 주 소 : 예천군의회 (우 36826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)
- (☎054- 650- 6407, FAX 054- 650- 6409)
- 전자우편(이메일) : murayzzang@korea.kr

예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예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방법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근무조를 편성하여 제1항에 명시된 활동을 실시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방법일지에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.

제6조제1항중제2호를 제3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방법대원 출동비

제6조제2항제1호 중 “3개월”을 “6개월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1항제2호의 방법대원 출동비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출동비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방법일지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방법대원 출동비는 실종자 수색, 검문검색 등 필수 불가결한 출동에 한하여 지원하며, 일상적인 순찰활동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)자율방법대 근무조 편성표

구 분	근무조장 (연락처)	근무조원	비고
제1근무조			
제2근무조			
제3근무조			
제4근무조			
제5근무조			
제6근무조 ⋮			

[별지 제2호 서식]

()자율방법대 방법일지

20 년 월 일(요일), 날씨 :

총원 :		명,		금일 근무:		명,	
근 무 자	근무조	성 명	서 명	성 명	서 명		
근무시간		: ~ : (시간)					
근 무 구 역	1구역	근무지 : , 근무시간 : ~ (시간 분)					
	2구역	근무지 : , 근무시간 : ~ (시간 분)					
	3구역	근무지 : , 근무시간 : ~ (시간 분)					
	4구역	근무지 : , 근무시간 : ~ (시간 분)					
	5구역	근무지 : , 근무시간 : ~ (시간 분)					
	6구역	근무지 : , 근무시간 : ~ (시간 분)					
근무중 취급사항							
시 간		항 목		내 용 (근무동선, 범죄예방, 활동내용 등 상세기술)			
확인자	방법대장 :		(인)		파출소(치안센터): 직 성명 (인)		

[별지 제3호 서식]

자율방범대원 출동비 신청서			
☐ 신청인 인적사항			
성 명		연락처	
주 소			
☐ 신청내용			
명 칭	자율방범대		
출동내용			
신청금액	천 원		
예금계좌	금융기관명	예금종류	
	계좌번호	예금주 성명	
「예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방범대원 출동비를 지원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 청 인 : ○ ○ 자율방범대 ○ ○ ○(서명 또는 인) 예천군수 귀하			
첨부서류 : 방법일지			

※ 참석자 서명은 반드시 본인 자필로 기재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임무) 방법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5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3조(임무) ①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<u>② 방법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근무조를 편성하여 제1항에 명시된 활동을 실시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방법일지에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.</u>
제6조(예산지원) ① 군수는 방법대와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1. (생 략) <u><신 설></u> 2. (생 략) 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 1. 방법대가 <u>3개월간</u> 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 2. ~ 5. (생 략)	제6조(예산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<u>2. 방법대원 출동비</u> 3. (현행 제2호와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. 1. ----<u>6개월간</u>----- ----- 2. ~ 5. (현행과 같음)

현행	개정안
<u><신설></u>	③ 제1항제2호의 방법대원 출동비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방법대원 출동비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방법일지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<u><신설></u>	④ 제1항제2호의 방법대원 출동비는 실종자 수색, 검문검색 등 필수 불가결한 출동에 한하여 지원하며, 일상적인 순찰활동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아니한다.

【 관 련 근 거 】

□ 자원봉사활동 기본법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